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11. 17(화) 총 6매(본문 5, 참고 1)	
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	담당자	• 복합도시정책과 과장 김형석, 사무관 최철승, 주무관 정나선 • ☎ (044)201-3684, 3689, 3698	
보 도 일 시	2015년 11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6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

-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[11.17~12.28] -

- 국토교통부 (장관 강호인)는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“새만금특별법”)」 개정(“15.8월 공포) 후속조치로서,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7일(화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【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】

①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마련

-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이상 상시고용 + 외투기업과 제품·서비스 등의 구매실적 보유 등 +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인정

②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

- 민간사업자의 경우,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75%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(기존에는 감정가의 100% 매수)

③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 마련

-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도록 하고, 허가 가능지역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

④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

- 새만금 사업의 종류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고,
-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, 집단에너지 공급시설, 방재시설 등을 추가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 마련

-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던 자금지원, 국·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(국내기업 포함)에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, 시행령 개정안에서 “협력기업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.

-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,
- ㉠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·서비스 등 구매(판매) 실적 또는 ㉡ 기술제공·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나 ㉢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,
-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

- 아울러,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“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”을 추가하여,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하고자 하였다.

②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

-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잔여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,
- 앞으로는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%(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의 100%)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<기존>		<개선>	
매립지(A) 가액: 1,000억원	매립지(B) 가액: 300억원	매립지(A) 가액: 1,000억원	매립지(B) 가액: 300억원
- 매립지 A, B 조성사업에 사용한 비용 : 1,000억원 ⇒ 매립지 A만 소유권 인정 ⇒ 매립지 B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300억원에 매입		- 매립지 A, B 조성사업에 사용한 비용 : 1,000억원 ⇒ 토지 A만 소유권 인정 ⇒ 매립지 B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225억원(300억원*0.75)에 매입	

③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

-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선정하고,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*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.

* (중전)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 → (개정)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

※ (참고)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주요 요건 및 절차

<요건>

- ① 문체부 공고 기준(허가가능지역, 업체수, 세부절차, 등)을 충족할 것
- ② 입증 서류(자본납입 증명서류, 대출확약서, 투자확약서 등)를 제출할 것

<절차>

- ① 문체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(30일 이내 연장 가능)
- ② 사전심사 적합 통보시 투자기한 준수 등 조건 부여 가능
- ③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필요

④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

- 아울러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으며,
-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,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였다.

□ 그 밖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⑤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(PM: Project Manager)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 명시

-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,
 - “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”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⑥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(실시)계획을 변경할 때 “관계기관 협의 등”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

-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,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, “중요사항”만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,
 -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“중요사항*”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.

* (개발면적/사업비) 10% 또는 100만㎡ 이상 면적 변경 / 10% 이상 자원조달계획 변경 (토지이용계획) 용도별 면적의 10% 이상 변경, (개발계획) 사업시행자의 변경

⑦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

-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, 지자체, 공기업 외에 “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*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”를 지정할 수 있는데,
 - * 기존 시행령은 건설업자, 신탁업자, 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·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
-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(업종 관계없음)로 확대하여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다.

⑧ 기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

-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하고,
- 아울러,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,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 하였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다.

-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,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%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,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5%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,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
- 새만금에서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절차가 용이하게 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8일(월)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
(전화 : 044-201-3689 / 3698, 팩스 044-201-5565 / 5567)
-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.

참고

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등

* **새만금** : 만경강 주변의 만경평야와 동진강 주변의 김제평야를 합쳐 '만금평야'라 했으며,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만금평야가 조성된다는 뜻으로 '새만금'이라고 명명

① 사업개요

□ 새만금방조제 내측에(409km², 서울 면적의 2/3) **총사업비 22조원**을 투입하여, 291km²의 매립지를 조성하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

○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,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(국토부 소속)에서 총괄·집행

* **주요경과**: 방조제 건설('91.11~'10.4)→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('10.1)→새만금특별법 제정('12.12)→새만금개발청 개청('13.9)

새만금 위치도	용지별 이용 계획
	<p>① 산업연구(41.7km²): 조성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도레이·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</p> <p>② 국제협력(52.0km²):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</p> <p>③ 관광레저(36.8km²):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</p> <p>④ 농생명(94.3km²): 첨단농업 육성</p> <p>⑤ 환경생태(42.0km²): 생태환경 보전 기능</p> <p>⑥ 배후도시(10.0km²): 주거 거점 기능</p>

②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

